

주주각위

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21년 3월 26일 (금) 오전 11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63기(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유 한 익	1985년1월29일	현, (주)티몬 이사회 의장 전, (주)티몬 대표이사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신규선임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21년 3월 11일

 **넥센타이어주식회사** 
 대 표 이 사 강 호 찬 (직인생략)

붙임 : 제 3 호 의 안 : 정 관 일 부 변 경 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
<p>제 2 조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~27. (생략)</p> <p>28. <u>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</u></p> <p>29. ~ 31. (생략)</p>	<p>제 2 조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~27. (현행과 동일)</p> <p>28. (삭제)</p> <p>29. 고무제품 렌탈임대업</p> <p>29. ~ 31. (현행과 동일)</p> <p>32.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투자</p>
<p>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<u>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</u> 둘 수 있다.</p>	<p>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<u>지점을</u> 둘 수 있다.</p>
<p>제 10 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<u>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⑨ (생략)</p>	<p>제 10 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⑦ (현행과 동일)</p> <p>⑧ (삭제)</p> <p>⑨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 10 조의 4(<u>신주의 배당기산일</u>)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 10 조의 4(<u>동등배당</u>)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(<u>전환된 경우를 포함</u>)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
<p>제 12 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<u>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제 12 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~ 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 이 <u>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u></p>
<p>제 15 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~ ⑤ (생략)</p> <p>⑥ <u>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 15 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p>
<p>제 16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<u>신주인수권의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 16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(삭제)</p>
<p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⑤~⑥ (생략)</p>